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구정방향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07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723호 2012. 12. 3.(월)

【규 칙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1호(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) ... 1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842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) 9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843호(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) 13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844호(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) 17
-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-846호(공인 등록 공고) 27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	☐ 제정 이유 ○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「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가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 ☐ 주요 내용 ○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함(제2조 및 별표) ○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을 정함 (제3조)

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

2012. 12. 3.

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1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, 관리기준 등) 「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,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)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.

1.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
2. 도면

3.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2조 관련)

1. 도시공원

가. 규격 및 재질

- 1) 구조 : 지주에 표지판 전후 단면 부착구조(세로형)
- 2) 규격 : 60×160×16cm(W×H×D)
- 3) 재질 :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, 수성페인트도장

나. 도안요령

1) 내용구성

가) 타이틀(금연공원) 표시

나) 금연픽토그램 표시

다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: “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”

라) 금연구역의 범위

마) 연수구 시그니처 표시

2) 글씨체 : 국문(한양태백 볼드체), 국문(남산체)

3) 색상

가) 바탕색(초콜렛색), 테두리(연두색)

나) 타이틀/문구 : 진노랑, 흰색

다) 금연픽토그램 : 적색, 흰색

<도안 예시>



2. 기타구역

가. 버스정류소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재질, 실사출력(양면)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나. 학교정화구역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재질, 실사출력(단면)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다. 주유소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재질, 실사출력(단면)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3. 흡연구역 안내표지판

가. 규격 : 22×22×2cm(W×H×D)

나. 재질 :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, 수성페인트도장

다. 도안요령

1) 내용

가) 상단 : 흡연구역 표시(한글, 영문)

나) 하단 : 흡연마크

2) 글씨체 : 국문(서울남산체), 영문(서울남산체)

3) 색상

가) 바탕(초콜릿색), 테두리(연두색)

나) 글씨(진노랑, 흰색)

다) 흡연마크(흰색)

<도안 예시>



4. 공통사항

가. 표시방법

1) 해당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2)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,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나. 설치방법

- 1)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 - 가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의 이동이 잦은 지역
 - 나)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
 - 다)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- 2)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- 3)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다. 관리기준

- 1) 「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- 2)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- 3)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- 842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11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조례 설치 근거법 조항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의2 삭제 및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전면개정으로 인해 조례명 및 조례 제1조(목적), 제2조(명칭)를 근거법에 맞도록 변경하여 조례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.

2. 근거법령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

3. 주요내용

-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법조항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의2 및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33조의 2를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29조로 변경
-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2012년12월17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☎ 032-749-6934, FAX 032-810-7839, 참조:가정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(건의,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5. 참고자료

붙임1)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(안)

붙임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명칭을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제1조 중 “~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의2 및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33조의 2의 규정” 및 “청소년지원센터”를 “~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규정에 따라” 및 “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지원센터의 명칭은”을 “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”으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”를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<u>청소년지원센터</u>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46조의2의 및 「<u>청소년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치료·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·자원봉사·참여·인권 등의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<u>청소년지원센터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명칭) <u>지원센터</u>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<u>청소년지원센터</u>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	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</u>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청소년복지 지원법</u>」 제29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</u> ----- ----- 제2조(명칭) <u>상담복지센터</u>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<u>청소년상담복지센터</u>----- -----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- 843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11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설치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설치 근거에 적합한 새로운 근거법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

2. 근거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

3. 주요내용

-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설치에 관한 관련법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로 변경
-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삭제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2012년12월17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☎ 032-749-6934, FAX 032-810-7839, 참조:가정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(건의,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5. 참고자료

붙임1)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(안)

붙임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」 명칭을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
제1조 중 “~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~”를 “~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~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~”을 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~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명칭 <u>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</u>	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호</u>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구청소년수련관(이하 “청소년수련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(생략) 2. <u>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</u> <u>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</u> <u>공단</u>	제8조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삭제)
3. <u>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</u>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	3. -----제2조제3항----- -----
4. (생략) ③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- 844호

「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11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조례 설치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위원회의 근거법 조항 및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조례 관련 법규 및 운영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, 제11조, 제27조

3. 주요내용

- 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관련법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, 제22조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5조의2, 제11조, 제27조로 변경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

○ 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연임 제한

4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은 2012년12월17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☎ 032-749-6934, FAX 032-810-7839, 참조:가정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(건의,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5. 참고자료

붙임1)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일부개정조례(안)

붙임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 총 칙

제명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~ 청소년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22조~”를 “~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2 및 제11조와 제27조~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란 법 제13조”를 “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란 법 제11조”로 한다

제2조제2호 중 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2조”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(이하 “지도위원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27조”로 하고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참여위원회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

제2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

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~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~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지도위원

“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지도위원”을 “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법 시행령 제57조의”를 삭제한다.

제14조 “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9조 아래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

제20조(기능)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
2. 다른 시·군·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
3.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
4. 그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

제21조(자격)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한다.

② 참여위원회는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 소속 학생 또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중·고등·대학생 등으로 구성한다.

제22조(구성)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총무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무과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④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,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23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4조(위원 해촉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3.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(퇴학·형사처벌·사회문제 야기 등)하였을 경우

제25조(위원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26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구청장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개최한다.

②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(실비변상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·운영 중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 관한조례	명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청소년기본법</u> 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3조 및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들 의 건전한 육성,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청소년기본법</u> 」 제5조 의2 및 제11조와 제27조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<u>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</u> (이하 " 위원회" 라 한다)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인 천광역시연수구청장(이하 "구청장" 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	1.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--- -----법 제11조----- ----- ----- -----
2. <u>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지도위원</u> (이하 "지도위원" 이라 한다)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 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.	2.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----- -----법 제27조----- ----- -----
<신설>	3.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(이 하 “참여위원회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5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시 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 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
제2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위원회	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의 임기)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 ②(생략) ③(생략)	제2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5조(위원의 임기)① -----, -----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제3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(위촉 및 해촉) ①(생략) ②(생략) 1.(생략) 2. <u>법 시행령 제57조의</u>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.(생략)	제3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(위촉 및 해촉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.(현행과 같음) 2.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.(현행과 같음)
제14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<u>연임할 수 있다.</u> <신 설>	제14조(임기)----- -----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제15조~제19조(현행과 같음)
	제4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0조(기능)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 1.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. 다른 시·군·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.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

현 행	개 정 안
	4.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21조(자격)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한다. ② 참여위원회는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 소속 학생 또는 연수구에 거주하는 중·고등·대학생 등으로 구성한다. 제22조(구성)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, 총무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②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하고 총무과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 ④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간사를 두며, 지도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 제23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24조(위원 해촉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.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

현 행	개 정 안
	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.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(퇴학·형사 처벌·사회문제 야기 등)하였을 경우 제25조(위원 임기)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제26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구청장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개최한다. ② 참여위원회 운영은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.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27조(실비변상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제2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공인 등록 공고

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11. 28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다 음

1. 등록일자 : 2012. 11. 28(사용일 : 2012. 11. 28)
2. 공인 등록 사유 :
 - 조례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 신설
 -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조례
3. 등록 공인 인영 :
 - 가.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발전기금운용관인
 - 나. 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발전기금출납원인

붙임 : 공인 인영부 1부. 끝.

인 영 부

공인명	인 영			
인천광역시 연수구여성 발전기금운 용관인				
	2012 년 11 월 28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(등록)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
인천광역시 연수구여성 발전기금출 납원인				
	2012 년 11 월 28 일	년 월 일	년 월 일	년 월 일
	(등록)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	등록 . 재등록